

의안번호	제 72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1년 5월 3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24
----------	-----

제출연월일 : 2021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공채매입 면제 대상 확대(별표 2)
  -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대상을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5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제2조제3호부터 제6호의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자동차로 확대
- 채권 매입금액 감면시한 적용조항 확대(별표 2)
  - 공채매입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매입금액 감면시한 준용 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에서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확대

## 3. 의안전문 : 불 입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입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채의 매입면제대상 <제8조 관련>

구 분	면제대상 및 내용
<p>2. 사업·행위</p>	<p>가.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p> <p>나.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 1대에 한함)</p> <p>(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p> <p>(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p> <p>(3)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p> <p>(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p> <p>(5)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p> <p>(6)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p> <p>다. 주민 직영사업</p> <p>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주택건축 및 농·임·어업의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단, 농업인·임업인·어업인과 농·임·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제2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다</p> <p>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건축물의 대체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p> <p>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의 구매</p> <p>사.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도로·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p> <p>아.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기 위한 등록·허가·계약</p> <p>자.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인해 멸실 또는 파손된 재산의 개조·수선 및 대체취득시의 등록, 허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한함)</p> <p>차.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한 교환자동차의 신규등록(「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한함)</p> <p>카. 법인 합병 및 분할시의 자동차 이전등록</p> <p>타. 「<u>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전액 면제한다.</li> <li>2. 채권 매입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매입금액에서 150만원을 감면한다.</li> <li>3. 채권 매입금액 <b>감면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b>한다.</li> </ol>

## 관련법령 발취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등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 제7호에 따라 말소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다시 등록하기 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